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6
------------	-----

발의연월일 : 2016. 6. 23.

발의자 : 안철수 · 김관영 · 박주선

장병완 · 권은희 · 황주홍

주승용 · 김동철 · 박지원

천정배 · 김경진 · 손금주

신용현 · 박준영 · 채이배

박주현 · 장정숙 의원

(17인)

제안이유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3년 후 만료될 예정(2017년 12월 31일)임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한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다.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4).

라.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를 각각 제2절부터 제4절까지로 한다.

제2장에 제1절(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벤처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7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u></p> <p><u>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u>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u></p> <p><u>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u></p> <p><u>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u></p> <p><u>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u></p> <p><u>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u></p> <p><u>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u><신 설></u>	

③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기업 청장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벤처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p><u><신 설></u></p> <p>제1절 (생 략) 제2절 (생 략) 제3절 (생 략)</p> <p>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p> <p>第2條(有效期間) 이 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 다.</p>	<p><u>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p> <p><u>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u> <u>영)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u> <u>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u> <u>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u> <u>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u> <u>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u> <u>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u> <u>수 있다.</u></p> <p>제2절 (현행과 같음) 제3절 (현행과 같음) 제4절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p> <p>第2條(有效期間) -----<u>2027년-</u> ----- --.</p>
--	---